

판 결

사 건

[REDACTED]

원 고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피 고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[REDACTED]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,25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